

대학원 약학과 운영 내규

1. 기존 학과 내규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2. 아래 내용 중 빨간색 내용은 필수로 정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달리하여 작성. 단, 석사학위 논문대체를 시행하는 학과에서는 제16조와 제17조를 필수로 정하여야 함
3. 기존 학과 내규가 있는 학과에서는 2번을 반영하여 작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약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약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약학과 소속 교수들은 약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제5조 (과목개설)

제6조 (교·강사 배정)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생의 경우 주저자(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로서 1편 이상의 SCI급 학술지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논문게재 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박사과정생의 경우 주저자(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로서 2편 이상의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시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한다.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종합학력시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 자격시험은 내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으로 한다. 외국인 학생의 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가능하다. 내국인 학생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또는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가 가능하다.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경우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으로, TOEIC 700점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만 면제한다. 한국어 성적은 TOPIK 5급 이상 이며, 입학 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학생은 TOPIK 4급 이상으로 정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약학과의 석사학위 취득 방법은 학위논문으로 한다. 따라서 약학과 석사학위 취득은 33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학위논문 작성·심사·통과 과정을 통해 취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불가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제14조 (예비발표)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 학위작품을 추가 선택한
할 경우 심사방법 및 절차를 학과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학과로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 제작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함
※ 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